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863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년 월 일 (제 회) |

**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 일부개정조례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| 이옥규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1년 10월 1일 |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6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발의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송미애

1. 개정이유

-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,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령의 명칭과 약칭의 사용(안 제4조)
 - 영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 - 법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3조)
 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

○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(안 제2조 및 안 제13조)
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→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호선 → 선출
- 개의 → 개의(開議)
- 없는 한 → 없으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호선**”을 “**선출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**”를 “**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「건설기술진흥법」**”을 “**「건설기술 진흥법」**”으로, “**관련법령**”을 “**관련 법령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**위원회는 영 제108조**”를 “**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8조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“**개의**”를 “**개의(開議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하여 서**”를 “**해서**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당사자”를 “당사자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<u>호선</u>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 | 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<u>선출</u>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 |
| 1. · 2. (생략)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|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|
| 4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<u>관련법령</u> 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| 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<u>관련법령</u> 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|
| 5. 삭제 | |
| 6. · 7. (생략) | 6. · 7. (현행과 같음) |
| ③ (생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<u>영 제108조</u> 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| 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|
| 1. ~ 3. (생 략) <신 설>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5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|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<삭 제> |
| 6. · 7. (생 략) | 5. · 6. (현행 제6호 및 제7호 와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생 | 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현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약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<u>하여서는</u> 아니된다. | 행과 같음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<u>해서는</u> 아니된다. |
| 제5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(생 약) 1. (생 약) 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<u>당사자</u> 인 경우 ② · ③ (생 약) | 제5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<u>당사자</u> 인 경우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소위원회) ① · ② (생 약)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<u>이내</u> 로 | 제6조(소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<u>이하</u> 로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구성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는 한</u>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</p> | <p>구성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으면</u>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않은</u> 경우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<u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</u>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<u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</u>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|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· 운영)

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감독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 · 하수도 사업,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(이하 “주민참여감독자”라 한다)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(實費)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9조(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)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0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)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6.9.13>

1. 마을 진입로 확장 · 포장공사
2. 배수로 설치공사

3.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
 4. 보안등(保安燈) 공사
 5. 보도블록 설치공사
 6. 도시 · 군계획도로 개설공사
 7. 마을회관 공사
 8. 공중화장실 공사
 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
 10. 공원 공사
 11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. <개정
2016.9.13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